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 6. 8 선고 2020가단154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조합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희

변 론 종 결 2021. 4. 27.

판 결 선 고 2021. 6.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1~5, 7, 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7. 체결된 증여예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D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6. 6. 1. 접수 제74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제1~5, 7, 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9. 10. 7. 접수 제135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9. 10. 7. 접수 제13518호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채권 및 채무자의 재산 처분

가. 원고는 2017. 3. 13. D에게 30,000,000원을 상환기일 2021. 3. 13.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다(갑 제1호증의 1).

나. 원고는 2019. 4. 9. D에게 10,000,000원을 상환기일 2020. 4. 9.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다(갑 제1호증의 2).

다. 원고는 2019. 4. 11. D에게 50,000,000원을 상환기일 2021. 4. 11.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다(갑 제1호증의 3).

라. D은 2016. 3. 7. 피고와 별지 목록 제1~5, 7, 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예약을 체결하고 2016. 6. 1.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갑 제6호증).

마. D은 2019. 10. 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9. 10. 7.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5, 7, 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쳐주었고,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갑 제6호증).

2. 제척기간 도과 여부

피고는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 가등기 경로일인 2016. 6. 1.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은 재산 처분일이 2019. 10. 4.로서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그리고 나머지 부동산의 경우에도 원고가 그에 관한 증여예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 사건 소 제기 1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기 관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거나,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성립된 채권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별지 목록 제1~5, 7, 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본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 참조),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날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 등기원인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증여예약일인 2016. 3. 7.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피보전채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채권은 모두 위 일자 이후에 성립하였고, 위 증여예약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4. 9.자 대출금 채권이 2013. 5. 16. 이미 성립한 대출금 채권의 대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D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모두 위 부동산의 처분일인 2019. 10. 4.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4. 사해행위 여부 등

피고는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이 피고가 D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D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위 부동산을 D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부동산의 증여일이 2019. 10. 4.인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11. 6. 피고와 D이 협의이혼 신고를 한 사실(을 제1호증)에 비추어 보면, 위 부동산에 대한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루어진 재산 처분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위 각 판결 참조).

판사 허윤범

목 록

①. 전복 고창군		전 7558㎡
②. 전복 고창군		전 535㎡
③. 전복 고창군		임야 537㎡
④. 전복 고창군		임야 251㎡
⑤. 전복 고창군		대 919㎡
6. 전복 고창군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112.65㎡		
⑦. 전복 고창군		전 826㎡
⑧. 전복 고창군		대 334㎡